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68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2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 '14년도 우리청의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고,
- 직접생산확인 기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명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리

###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3. 주요내용

#### < 총칙 개정 내용 >

##### □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 임차공장 및 시설에 대한 임차료 납부 증빙수단을 납부통장 외에도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도 가능토록 확대[제6조(임차공장), 제11조(생산시설 확인방법)]
- 전기사용실적은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조사하나, 사업자등록 1년 이내의 기업은 사업영위기간동안의 자료만 확인하도록 명시(현 기준은 3개월 미만의 기업만 해당)[제14조(기타)]

##### □ 조문 명확화

-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있던 생산시설 확인 방법(증빙자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알기 쉽게 표현[제11조제1항]

#### < 경쟁 제품별 세부 개정 내용 >

##### □ 직접생산확인기준 요건 완화

##### ① 생산공장 요건 완화(4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생산공장 제조시설면적 최소 기준을 165m <sup>2</sup> → 132m <sup>2</sup> 로 완화	51.자외선 살균기
(2) 표준산업분류번호 29163(컨베이어장치 제조업) 추가 인정	57.크레인
(3) 변압기의 제조시설면적 규정은 330m <sup>2</sup> 이상이나 건식변압기의 경우 대부분 소형이므로 제조면적 요건을 280m <sup>2</sup> 로 완화	134.변압기
(4) 재활용원자재를 사용하는 활성탄이 아닌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생산공장 요건에서 제외	193.활성탄

## ② 생산시설 요건 완화(12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자가 보유만 인정하였던 생산시설(절단설비, 구멍가공설비, 접착설비, 집진설비)에 대해 임차보유도 허용	3.씽크대
(2) 타 밸브와 달리 버터플라이밸브 확인시에만 요구하였던 '용접기', 절단기'를 필수확인 설비에서 제외	36.밸브
(3) 알곤용접 작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기용접기 보유 요건 삭제	38.상업용오븐 55.취사용기구
(4) 항온기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요건 삭제	40.소방용 방재장치
(5) 테스터기는 교정성적서가 필요없으므로 교정성적서 제출 대상 기기에서 제외	54.주차장치
(6) 필수생산시설을 4종(재단기·인쇄기·접합기·합지기) → 3종(재단기·인쇄기·접합기 또는 재단기·접합기·합지기)으로 축소	69.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7) 보일러(1,000kg) → 보일러(500kg) 또는 전기건조기(진공, 열풍, 분무 등)으로 생산시설 보유조건 완화	115.혼합조료
(8) 항온습습기의 경우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계약을 맺은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139.자동점멸기
(9) 무선송수신기 및 양방향라디오에 대해서는 필수생산시설을 5종(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레이터, 주파수카운터, 와트미터 각 1대 이상) → 1종(종합계측기, 3대 이상)으로 완화	153.무선통신 장치
(10) 파·분쇄기로 광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쪼크랏샤 추가 인정	165.석회석
(11) 공장등록증 보유요건을 삭제하고 증빙자료로 검사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광업시설설치승인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으로 변경	165.석회석
(1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생산시설 중 '분동 1천 킬로그램(자동차용은 2천 킬로그램)' → 푸쉬풀게이지 1대로 완화	201.승강기 유지보수

## ③ 생산인력 요건(5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기계류 관련 자격증에 '기계기술사', '에너지관리기술사·기능장·기능사' 추가 인정	기계류 품목 공통
(2) '차량번호 판독기' 제품의 인력요건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2명 이상(7년 이상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자 1명 포함, 4년 이상 경력자 1명 포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 이상(3년 이상 경력자)으로 완화	161.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3) 생산인력 요건을 '4인 이상' → '3인 이상(단 산림골재채취업은 4인 이상)'으로 완화	173.천연골재
(4) 채석기 인력의 자격은 '채석기운전기능사' → '채석기운전기능사 또는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채석기면허소지자 또는 아스팔트믹싱 플랜트운전기능사'로, 천공기 인력은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또는 천공기운전기능사'로 기회를 확대	173.천연골재
(5) '자료처리업무'에서 '도서마크인력'을 분리하고 자료처리업무 요구 인력을 대표자 포함 '2인' → '1인'으로 완화	202.자료처리 업무

④ 생산공정 요건(2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생산공정 증빙자료로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외에 '작업일지 및 지시서'를 추가로 인정	3.싱크대
(2) 옴셋인쇄물을 합지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필수공정에서 '인쇄'를 제외	69.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⑤ 기타 요건(2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생산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전기사용실적에 포함	35.무대장치
(2) 데이터포트장치는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제품만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요건 삭제	152.데이터 포트장치

□ 세부 제품별 확인기준 분리, 설명 명확화, 오기 정정, 타법령 반영

① 세부 제품별 확인기준 분리(3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가드레일'에서 '도로중앙분리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	6.가드레일
(2) 제조 방식에 따라 '자동성형제품'과 '강관가공제품'으로 구분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을 재정의	6.가드레일 10.난간
(3) 기존 '모터펌프'에서 '정량 및 모노펌프'를 구분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을 재정의	34.모터펌프

② 설명 명확화(4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토출량 실험장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도면 첨부	34.모터펌프
(2) 생산설비의 명칭을 '후렉소폴더 글루어 또는 스티처' → '후렉소폴더 글루어 또는 후렉소폴더 스티처'로 명확화	69.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3) 석회석 채취공정에 대한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	165.석회석
(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삼시 보수책임인력 2인 이상, 삼시 실무기술인력 3인 이상' → '유지관리책임인력 1인 이상' 및 '유지관리기술인력 1인 이상' 및 '실무기술인력 3인 이상'으로 인력 구분 명칭 변경	201.승강기 유지보수

### ③ 오기 정정(13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생산공정 세부설명에서 구멍가공 공정의 설명에서 '선반 등의 위치' → '선반 또는 경첩 등의 위치'로 변경	3.싱크대
(2) 표준산업분류번호를 28119(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7193(의료용 가구제조업)으로 변경	4.전동식 의료용 침대
(3) 생산시설 세부설명에서 Co2용접기 → CO2용접기로 변경	6.가드레일 10.난간
(4) 생산시설에서 '붙임35-1' → '붙임36-1'로 변경	36.밸브
(5) 생산시설에서 PROTOCOL ANALYZER의 번호를 '③' → '⑤'로 정정	54.주차장치
(6) 생산시설 세부설명에서 '가공' → '접합'으로 변경	69.골판지심자 및 판지심자
(7) 부처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로 변경	129.도로표지병 162.레이콘 204.전시부스 설치용역
(8) 생산시설 세부설명에서 '정전압공기 측정기' → '정격전압 측정기'로 변경	130.도로표지판
(9) 생산공정별 세부설명에서 검사 공정의 연번을 '5' → '7'로 변경	130.도로표지판
(10) 기타 항목에서 '매장량→광물자원공사 확인' → '매장량 : 광물 자원공사 확인', '광산물생산보고서' → '광산물생산실적증명서', '생산량→관할 도,시,군,구에서 확인' → '관할 시·군·구 발행 증명서', '광산의 평균품질' → '광산의 평균품위'로 정정	165.석회석
(11) 생산공정별 세부설명에서 '발행' → '발생'으로 정정	173.천연골재
(12) 송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송강기보수업등록' → '송강기 유지관리업등록'으로, '겉게이지' → '틈새게이지'로 정정	201.송강기 유지보수
(13) 부처명칭 변경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정정	203.전산업무

### ④ 타 법령 개정 반영(1항목)

주요 내용	해당 제품
(1) 광업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자는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 규정을 반영하여, '채굴계획인가증명원'을 확인	165.석회석

#### 4. 의견제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8918, Fax 042-472-7932)

-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2. 개정(안) 전문